

공 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-2033호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정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
행위제한 열람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목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본 행위제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 11월 1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열람기간 : 2023.11.16.(목) ~ 2023.11.30.(목) (14일간)
2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영등포구 당산로 123, 4층)
3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※ 열람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)
4. 행위제한 내용
 - 가. 제한사유 : 정비구역 지정 이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
 - 나. 제한지역

구분	사업명	위치	면적
1	신길역세권(확대구역)	신길동 48-1번지 일대	3,590.8㎡
2	대방역세권	신길동 1358번지 일대	14,922㎡
3	대림역세권	대림동 807-13번지 일대	15,616㎡
4	신길동 96-24	신길동 96-24번지 일대	13,497㎡
5	신길6역세권	신길동 1448-1번지 일대	22,049㎡
6	도림2역세권	도림동 239-12번지 일대	60,462㎡
7	여의대방신길역세권	신길동 1343번지 일대	16,449㎡

다. 제한대상 행위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토지의 분할

라. 제한 적용 예외

-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마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지정 시까지

5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6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(☎02-2670-3526)로 문의 바람.